

2. 대여금청구의 소

가. 총 설

(1) 의 의

“대여금”이란 타인에게 빌려준 돈을 말한다. 대여금 청구사건은 소비대차계약상의 대여금반환청구권을 권원으로 하는 것이므로 “금전소비대차”라고도 한다.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동종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598조 내지 제608조)이다. 여기서 “대체물”이란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도 당사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물건을 말한다. 물건은 개성이 중요시되지 않으며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돈·쌀·술 따위가 있다.

대여금 반환청구의 방법은 지급명령신청, 대여금반환 조정신청, 대여금반환청구의 소가 있고 위 신청 및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2)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민법은 채권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하는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는데, 대여금채권은 변제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나는 경우 채권이 소멸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민법 제162조).

대여금소멸시효의 기산은 최후 이자 변제일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

나. 대여금청구의 구체적 청구취지 기재례

(1)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그 금전의 액수를 표시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금전이 대여금이라든지 물품대금이라든지 채무의 종류까지 기재하지 않는다.

“예”대여금 청구(기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8,900,383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기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53,541,700원 및 그중 234,011,7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6.부터, 19,53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각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㉔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기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30%,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에서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 이자율인 연 5%가 아닌 약정 이율을 표시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7.부터 2014. 12. 20.까지는 연 19%, 2015. 12. 21.부터 2016. 5. 15.까지는 연 22%, 2016.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3,631,828,690원 및 위 돈 중 3,202,611,0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429,217,61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30%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약정이율의 변경 또는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그 제한이자율이 법 규정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기간별로 이율이 달라지는 때는 위와 같이 기재한다.

(2)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청구하는 경우

외화채권은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판례는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 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민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 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고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 그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기초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⁹⁸⁾”고 판시하였다. 또한 “채권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관과 체결한 ‘주채무인 외화대출금을 미리 정해진 환율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계약을 이행하기로 한’ 특약에 따라 보증채권을 미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한 경우, 법원이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 적용해야 할 환율의 기준 시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⁹⁹⁾”고 판시하였다.

“예” 외화채권을 청구하는 경우(기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500,000달러¹⁰⁰⁾을 지급하라.¹⁰¹⁾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경우

☐ 대여금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14,564,000원 및 이에 ‘대한’¹⁰²⁾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¹⁰³⁾부터 ‘다 갚는 날까지’¹⁰⁴⁾ 연 12%¹⁰⁵⁾의 ‘비율로 계산한’¹⁰⁶⁾ ‘돈’¹⁰⁷⁾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8)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99)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9891 판결

100) ‘불’로 표시하기도 한다.

101) 일본국 통화의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 통화 500,000엔을 지급하라.’고 기재한다.

102) ‘대하여’로 표시하기도 한다.

103) ‘송달일 다음 날’ 또는 ‘송달 익일’ 등으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특정한 날짜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 경우 판결주문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날을 확정하여 특정한 날짜로 기재한다.

104) ‘다 갚는 날까지’를 ‘다 갚을 때까지’, ‘완제일까지’, ‘완제에 이르기까지’ 등으로 표시하기도 한다.

10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 2019. 6. 1.]에 따라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연 12%이다.

106) ‘비율로 계산한’을 ‘비율에 의한’, ‘율에 의한’ 등으로 표시하기도 한다.

107) ‘돈’을 ‘금원’으로 표시하기도 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7,574,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49,736,257원 및 이에 대한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여러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동일 또는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 대여금 청구

1. 피고는 원고 김○일에게 7,000,000원, 원고 정○일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5.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 김○일에게 7,000,000원, 원고 정○일에게 3,000,000원, 원고 한○일, 이○일, 주○일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 남○현, 손○연에게 각 돈 4,078,260원 및 이에 대한 20○○. 3. 1.부터, 원고 김○아, 하○애에게 각 돈 4,282,062원 및 이에 대한 20○○. 3.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 민○남에게 1,195,823,485원, 원고 조○범, 조○지에게 각 797,215,657원 및 각 이에 대한 20○○. 3.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는 원고 안○표, 박○수, 안○섭에게 각 20,906,500원, 원고 안○미에게 10,560,052원, 원고 안○희에게 19,532,585원, 원고 유○모에게 52,596,447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는,
가. 원고 김철수에게 80,546,717원 및 그중 336,680원에 대하여는 20○○. 11. 16.부터, 나머지 80,310,037원에 대하여는 20○○. 11. 24.부터,
나. 원고 김순희에게 80,311,041원 및 이에 대한 20○○. 11. 24.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에게, 피고 김○한은 35,110,000원 및 이에 대한 20○○. 8. 24.부터, 피고 김○권은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4. 30.부터, 피고 한○섭은 19,525,000원 및 이에 대한 20○○. 10.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원고에게, 피고 이○○은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김○○은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피고는 원고 김일철에게 90,872,003원, 원고 구순임에게 89,572,003원, 원고 김이균, 김이일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 중 원고 김일철에 대한 47,309,763원, 원고 구순임에 대한 45,709,763원, 원고 김이균, 김이일에 대한 각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 5. 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김일철에 대한 43,562,240원, 원고 구순임에 대한 43,862,240원, 원고 김이균, 김이일에 대한 각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 5. 8.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행은 미화 24,583,277.75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〇〇. 8. 20.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97%,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은행은 미화 8,194,425.91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〇〇. 8. 20.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97%,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380,653원, 선정자 김〇정에게 687,489원, 선정자 윤〇숙, 윤〇옥, 윤〇우, 윤〇하, 윤〇복, 윤〇순에게 각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〇〇. 1. 13.부터 같은 해 8. 1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는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66,471,964원 및 이에 대하여 20〇〇.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여러 피고별로 이율 및 기산일이 다른 경우

㊦ 대여금 청구(응용형, 여러 피고별로 이율 및 기산일이 다른 경우)

1. 원고에게,
 피고 노〇〇은 228,387,98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3부터,
 피고 이〇〇은 60,718,458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6부터 각 2016. 3. 22까지는 연 19%의, 그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증권회사가 고객의 주식을 처분하여 신용융자금에 충당하는 경우 주식을 처분할 수 있었던 최초의 시점에 처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고객이 신용융자금이나 주식매수대금을 증권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증권회사가 매수주식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신용융자금이나 미수대금에 충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증권회사로서는 고객의 손실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권회사가 매수주식을 처분할 수 있었던 최초의 시점에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당시 주식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가격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 한 그 시점에 처분하는 것이 반드시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미리 고객으로부터 위와 같은 시점에 매수주식을 처분하여 줄 것을 위임받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권회사가 위와 같은 시점에 매수주식을 지체없이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30150 판결)

☐ 대여금 청구(금액별로 이율 및 기산일이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28,450,800원 및 위 돈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8.부터 2015. 5. 27.까지 연 15%의,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17%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071,800원에 대하여는 2115. 6.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17%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379,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17%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시킨 것이 금전채무에 대한 현실 제공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그로 인한 변제의 효력발생시기(입금기재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채무자가 현금을 입금시켰다고 하더라도 예금명의자인 제3자가 당해 금전채권에 대한 변제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한 그 입금이 채무 내용에 좇은 현실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 채권자가 금융기관으로서 채무자에게 금전채무의 이행방법으로 제3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예금계좌가 채권자의 관리하에 있어 채권자가 즉시 인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아무런 유보 없이 입금시킨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입금한 금원이 그 예금계좌에 들어가 입금기재된 때에 그에 따른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7698 판결)

☐ 대여금 청구(금액별로 기산일이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8,362,000원 및 이중 4,362,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3.부터,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소액사건의 병합심리로 그 소가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여부는 제소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병합심리로 그 소가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였다고 하여도 소액사건임에는 변함이 없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20579, 20586 판결)

(6) 여러 피고 사이의 상호관계의 표시

(가)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각 피고의 채무가 분할채무(민법 제408조)이거나 독립한 채무이어서 그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각 피고별로 각각의 채무의 범위를 확정하여 표시한다.

1. 원고에게, 피고 김○○은 1,500,000원, 피고 이○○은 800,000원, 피고 주○○, 유○○은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원고에게 피고 이○희는 83,333,333원, 피고 고○정, 고○옥, 고○옥은 각 55,555,55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에게, 피고 사○택은 9,697,862원, 같은 이○용은 8,148,294원, 같은 오○균은 1,210,409원, 같은 김○퇴는 5,619,96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수인이 그 임금합계액으로 발행받은 일매의 어음을 각자 받을 몫의 금액으로 나눈 수매의 어음으로 할인받은 경우, 그 채권관계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수인의 채무자가 각기 일정한 돈을 빌리는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 채무는 분할채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거나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상 불가분인 경우에 한하여 불가분채권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리는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수인의 골재운송업자들이 그 운임합계액으로 소외회사로부터 약속어음 1매를 발행받아 그 어음을 각자 받을 몫의 금액으로 나눈 수매의 어음으로 할인받은 것이라면 위 소비대차관계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 또는 연대채무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무자 각자가 각각 자기 몫으로 받은 어음액면금액 상당의 채무변제 책임만 지는 분할채무라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다카 2159 판결)

[참조판례] 별개로 금전을 대여한 수인의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그 정산금 반환의무가 연대채무인지 여부

수인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별개로 금전을 차용하여 주고서 2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공동으로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가 담보권을 실행함에 있어 합의에 의한 공유물분할 방법으로 각 채권자들의 대여금 비율에 따라 각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각각 따로 자기 몫의 담보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각기 일정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 채권은 분할채권인 점에 비추어 그 정산금을 채무자에게 반환함에 있어서는 위 각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유를 가지고 연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로 풀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유가 연대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상 요인이 된다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1146 판결)

(나)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1인과 연대보증인 등 중첩관계가 있는 2인 이상의 피고에 대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상호관계와 채무의 범위를 확정하여 표시한다.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음을 표시함에 있어서는 이행의무의 성질을 명확히 하여 준다는 관점에서 ‘연대하여’, ‘합동하여’, ‘공동하여’ 등의 문구를 사용한다.¹⁰⁸⁾

연대채무에는 연대채무자의 채무(민법 제413조,¹⁰⁹⁾)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채무(민법 제437조단서,¹¹⁰⁾) 일상가사로 인한 부부의 채무¹¹¹⁾(민법 제832조¹¹²⁾) 등이 있다.

☐ 대여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 주채무자 1인과 연대보증인 여러 사람에게 대하여 동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이다. 이하 같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92,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〇〇.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21,67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정〇복에게 55,250,128원, 원고 이〇용, 동 이〇희에게 각 34,166,752원, 원고 이〇성, 동 박〇순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〇〇. 7.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08) 중첩관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 177면 이하 참조

109)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110)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1) 부인이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45평형 아파트의 분양금을 납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분양금을 납입하였고, 그 아파트가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금전차용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112)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〇〇. 4. 21.부터 20〇〇. 12. 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손〇연은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〇〇. 3. 1.부터 20〇〇. 12. 9.까지는 연 19%,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김〇일, 김〇이에게 각 35,711,813원, 원고 김〇삼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〇〇. 6.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동남주식회사에게 55,975,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〇〇.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780,670원 및 이에 대한 20〇〇. 5. 14.부터 20〇〇. 6. 12.까지는 연 12%, 그다음 날부터 20〇〇. 10. 15.까지는 연 13%,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4%,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대여금 청구(중첩관계, 외화채권, 매매계약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병합청구, 별지인용)

1. 피고 주식회사 〇〇산업, 이〇석, 유〇병, 김〇강, 김〇진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329,911.24\$와 그중 별지 대출 내역 및 회수 내역표의 각 잔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별지 최종 이자 수입일란 각 기재 각 일자의 각 다음 날부터 각 2014. 12. 16.까지 연 18%, 그다음 날부터 2015. 8. 30.까지 연 19%,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이〇석과 피고 이〇봉 사이에 2015. 1. 30. 맺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이〇봉은 피고 이〇석에게 〇〇지방법원 〇〇등기소 20〇〇. 3. 28. 접수 제107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참조판례] ①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가 그 채무 있음을 알면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분양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매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매각대금을 위 분양금 변제에 사용하였고 매각도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서울지법 1999. 10. 20. 선고 98가합101847 판결 : 확정)

☐ 대여금반환 청구(중첩되는 피고들의 집합이 복수인 경우)

1. 원고에게, 피고 김동일, 정일남은 공동하여 5,000,000원, 피고 김동일, 최영일은 공동하여 2,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 대여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91,531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한 상계의 효력이 원채무자에 대해서 미치는지 여부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의 자신에 대한 그 채권에 대하여 대동액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연대채무자 1인이 한 상계의 절대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인 원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상계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다56443 판결)

☐ 대여금 청구(중첩관계, 여러 피고별로 기산일이 다른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은 20○○. 1. 5.부터, 피고 김○○은 20○○. 2. 1.부터, 피고 유○○은 20○○. 3.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대여금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5,719,407원 및 그중 5,475,100원에 대한 201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그중 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기간 동안 위 비율로 계산한 돈은 소외 홍○○와 연대하여 지급하라.

[참조판례] 남자 회원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자가 여자인 경우에 있어 카드 앞면의 회원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의 첫 숫자가 1이면 남자를 의미하므로 가맹점이 카드의 앞면을 살펴보기만 하면 카드상의 회원이 남자임을 알 수 있어 위 여자가 그 카드의 회원이 아님을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데도 가맹점의 직원들이 상품판매에만 급급하여 카드의 이용자가 회원 본인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가맹점의 과실을 참작하여 회원의 책임을 감액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5129 판결)

☐ 대여금반환 청구(금액이 피고별로 달라 중첩부분과 비중첩부분이 있는 경우)

1. 원고에게, 피고 김동일은 10,000,000원을, 피고 정일남은 피고 김동일과 연대하여(또는 공동하여) 위 돈 중 8,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또는 공동하여) 8,000,000원을, 피고 김동일은 2,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1. 원고들에게, 피고 법률산업주식회사는 12,106,950,478원, 피고 서원공제조합은 피고 법률산업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2,77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3.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대여금반환 청구(주채무자와 2인의 단순보증인이 있는 경우 : 이른바 분별의 이익이 있어 보증인 사이에는 분할채무가 된다)

1. 원고에게, 피고 김동일, 정일남은 공동하여 5,000,000원을, 피고 김동일, 최영일은 공동하여 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1. 원고에게, 피고 김동일은 10,000,000원을, 피고 정일남, 최영일은 피고 김동일과 공동하여 위 돈 중 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 대여금반환 청구(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2,4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피고 김일남, 이영남이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으로 피고 김일남, 김이남, 김삼남, 김사남이 각각 1,200만 원, 8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씩 상속을 한 경우)

1. 원고에게, 피고 김일남, 이영남은 연대하여 24,000,000원을,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 김이남은 8,000,000원을, 피고 김삼남, 김사남은 각 2,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 대여금반환 청구(청구의 내용을 별지목록으로 작성하고 그것을 청구취지에서 인용하는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채권내역서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부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